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8-27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8. 4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「지방세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구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재산세(주택분)의 일시 부과·징수 가능 세액 범위 확대
- 10만원 → 20만원으로 상향 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세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4. 기타사항

- 가. 입법예고 : 2018. 2. 8. ~ 2. 28. (제출의견 없음)
- 나.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다.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라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 심의회 심의·의결 (2018.3.29.)
- 마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중 “10만원”을 “20만원”으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하는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납기) 법 제115조제1항제3 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 당 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 이 <u>10만원</u> 이하인 경우에는 납 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 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·징수 할 수 있다.	제9조(납기) ----- ----- ----- - <u>20만원</u> ----- ----- ----- -----